

# 2021년 새롭게 시행 및 적용 되는 캘리포니아 주 법규

2021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주법들이 대거 시행된다. 새해 첫날 발효되는 새 법규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직장내 코로나 확진 통보

### (Employee 'Right To Know')

직장내 코로나19 확진 통보 의무화 법(AB685)이다.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24시간 내 모든 고용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확진자에게 상해보험 및 유급 병가 등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려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로컬 보건국에 확진자 발생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법규를 어길 경우, 고용주들은 코로나 근무 위험지대로 분류돼 영업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 2. 12주 가족병가 확대 적용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이 거주 내 대부분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가족병가법(SB 1383)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문제나 가족 돌봄, 신생아 출산을 위한 12주 가족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등록된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손자녀 및 형제, 자매로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 사진=세크라멘토 주 청사

## 3. 주 최저임금 추가 인상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수 25명 이하의 회사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 4.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Gender Wage Gap)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특정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매년 직원 급여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CDFEH)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여성 고용인이 몇 명인지도 보고해야 한다. CDFEH는 데이터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정황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CDFEH에서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은 보고서에서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있다.

## 5.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의무화

### (Minority Board Representation)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흑인,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 이사를 최소 1명 영입해야 한다는 법(AB979)이다.



한 신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10. 식품업계 종사자 손 씻기

이미 시행 중인 주법(AB 1867)에 의해 식품업 고용주는 종원업이 30분 마다 작업장을 떠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씻어도 된다.

## 11. 특정 자동차 주 내 판매 금지

브레이크 패드에서 중금속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했던 2010년 법규가 올해 더 발효될 예정이다. 2021년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한 법은 구리 재질이 5% 이상인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할 수 없다. 이는 곧 셰비(Chevy)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2021 카마로(Camaro SS, 1LE 및 ZL1) 모델을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12. 흑인 노예 후손 배상금

주법(AB 3121)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과 노예제도의 유산을 연구하고 보상 대상자를 찾는 업무를 집행할 태스크포스팀을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오는 6월 1일까지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13. 범죄 관련 법규

01) 경범죄 전환: AB 3234는 판사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경범죄 전환을 제공하도록 승인. 조건을 준수하면 형사 소송이 기각되고 기록이 삭제. 일부 가정 폭력 혐의, 스토킹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안됨.  
02) 성범죄자 등록 감소: SB 384는 종신 등록에 필요한 등록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 새로운 3계층 시스템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 요건 조건을 10년, 20년 또는 평생으로 정의.

03) 초크 걸기 금지: AB 1196은 법 집행 시 초크걸기(목을 심하게 조르는 행위 등) 및 경동맥 누르기나 조이기를 금지

04) 중범죄자 투표권 회복: 발의안 17은 보호 관찰 중인 약 50,000명의 중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05) 허위 신고 및 괴롭힘: AB 1775는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기타 유형의 차별을 근거로 한 허위 911 전화를 방지.

06) 제한 보호 관찰 기간: AB 1950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범죄에 대해 최대 1년, 중범죄에 대해 2년의 보호 관찰 기간을 제정.

07)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 AB 901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처벌을 보호 관찰 프로그램에서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함. 문제가 있는 학생을 법원 감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추가로 변경됨.

08) 청소년 교도소 단계적 축소: 청소년 사법 재정비 법안 SB 823은 남아있는 청소년 교도소를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복원 사무소로 대체. (7월 1일부터 유효)

09) 청소년 기록 숨기기: AB 2425는 청소년 범죄자의 기록을 공개 검사로부터 보호.

10) 보안관 감독위원회 설립: AB 1185는 각 카운티에 보안관 감독위원회 및 검사관을 설립하여 보안관을 감독할 수 있는 소환장 권한을 부여.

11) 캘리포니아 인종 정의 법 (California Racial Justice Act): AB 2524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재판 또는 재 신고를 추구하기 위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 편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진=Los Angeles Downtown



이사진이 9명일 경우에는 소수계 이사가 최소 3명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AB979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6. 주의산만 운전자 벌점

### (License points for distracted driving)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규다.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뒤 36개월 내 또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감점이 적용된다는 법이다. 운전 중 통화뿐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핸드프리 시스템은 예외다.

## 7. 어린이 차량 방치 구조시 책임 면제

### (Unattended children in motor vehicles)

낮선 인물이더라도 차량에 홀로 방치된 6세 이하 어린이를 구조할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규다. 차량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가 한여름에 차량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그 반대로 너무 추워서 사망할 위험이 있을 경우, 혹은 차 안에서 창문까지 다 닫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비한 법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 시 어린이와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아닌, 낮선 사람이 차량을 파손해 어린이를 구출해도 차량 파손 등에 대한 형사법 처벌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다.

## 8. 수감자 출신 소방관 지원법

### (Opportunities for inmate firefighters)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수감자들은 석방 이후 범죄기록을 지워 소방관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 사범은 예외다.

## 9. 직장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은 직장 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의무 신고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사 및 기타 주정부가 지정